

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 -

□ 제안이유

-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시 군보와 게시판 등에 게시하던 것을 최근 인터넷의 활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입법 예고안을 인터넷에도 병행하여 게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그동안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공고 게재토록 되어 있던 것을 군보와 인터넷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
□ 참고사항

-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

□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있어서 군보와 게시판 등에 게재토록 하였던 것을 인터넷 문화의 급속한 발달로 인터넷 사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이를 확대하여 일반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고,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을 이용하여 예고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